개인정보보호법위반

[광주지방법원 2014. 11. 20. 2014고단2754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김현웅(기소), 박규남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김민지 외 2인

【주문】

1

[피고인 1]

피고인 1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[피고인 2, 피고인 3, 피고인 4, 피고인 5, 피고인 6, 피고인 7, 피고인 8]

피고인 2, 피고인 3, 피고인 4, 피고인 5, 피고인 6, 피고인 7, 피고인 8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.

위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